
	<h1>보 도 자 료</h1>	작성과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안전부	<p>2021년 6월 15일(화) 석간 (6. 15.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담당자	과 장 조성환 사무관 임군묵
		연락처	044-205-3501 044-205-3522

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 6.15(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 완화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4명이상)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현재 온천전문검사기관 현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0개사
-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 (사례) 경남 창녕군 지하수업체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경력조건 충족이 곤란하여 등록을 포기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 (예시) 화학전문인력 : 전문학사이상(경력 5년→2년), 화학분석기사(경력 2년, 신설)

-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 * 출입검사 방해 150만원, 온천종사자교육 미참여 60만원 등
-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하여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천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온천법 제7조보다 지질기술사 및 화학전문인력 경력조건을 완화(5년→2년)하고 자격기준(기사자격자)을 추가, 전문인력의 폭을 확대

구 분	현 행(온천법 제7조)	개 정 안
특급 지질인력 (1명)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경력 5년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경력 2년
	지질학 박사·석사·전문학사 + 경력 5년·7년·10년	동일
	온천 개발·이용 관리자 + 경력 5년	〈삭제〉
	〈신설〉	지질 분야 기사 자격 + 경력 10년
지질전문 (2명)	응용지질·지구물리 전문학사 이상 + 경력 2년	동일
	〈신설〉	기사 자격 + 경력 2년
화학전문 (1명)	화학 전문학사 이상 + 경력 5년	화학 전문학사 이상 + 경력 2년
	〈신설〉	기사 자격 + 경력 2년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원상회복 미이행, 온천종사자교육 미참여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 감경사유 등을 구체화

* 원상회복 미이행(500만원), 온천종사자교육 미참여(60만원) 등 4개 조항

□ 원상회복 예외 및 방법·절차 구체화

- 온천자원관측시설 설치에 활용하는 경우 등으로 원상회복 예외를 규정,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서면통지 등 절차·방법을 구체화

□ 수질검사 수수료 조정

- 수질검사에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가 추가(20.9월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조정(2만원→7만원)

□ 온천이용허가 범위 확대

- 온천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을 온천이용허가 범위에 포함(20.12월, 충남 아산시 건의)